의안번호	2208178
의 뢰 인	강대식 의원
회 답 일	2025. 2. 19.
추계번호	25E08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추가,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할 경우, 2027년 3,680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조 5,876억원(연평균 3,175억원)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안 제59조의4제3항)	−3,680	−3,412	−3,141	−2,916	−2,727	−15,876	−3,175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table>
<tr><th>연번</th><th>조·항
(조제목)</th><th>주요내용</th><th>비고</th></tr>
<tr><td>1</td><td>안
제59조의4
제3항
(특별
세액공제)</td><td>○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상향 및 초등생 사교육비 공제 신설
– (현행)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대학생 900만원/인 등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
– (개정안)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u>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u> 등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대학생 <u>1,500만원</u>/인 등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 rowspan="2">세액공제
대상범위</td><td>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등</td><td>(좌동)</td></tr>
<tr><td>(신설)</td><td>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td></tr>
<tr><td rowspan="2">세액공제
한도</td><td>본인 무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인</td><td>(좌동)</td></tr>
<tr><td>대학생 900만원/인(대학원생 비대상)</td><td>대학생 1,500만원/인(대학원생 비대상)</td></tr>
</table></td><td></td></tr>
</table>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4제3항(특별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함

○ 개정안이 2025년 중 의결될 경우 2026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되어 2027년 연말정산부터 감면효과가 발생(징수 기준)

-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안 부칙 제1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 이에 따라 동법은 2025년 중 통과되며 2026.1.1.부터 공포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4.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교육비와 개정안에 의해 동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사교육비를 나누어 추계함

○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지급한 공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체육시설에 지급한 사교육비 등의 지출액임[1)]

○ 개정안은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사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함

❑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평생교육시설(동 나목), 국외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대학교)(동 다목),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동 라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조세지출 실적

❑ 2023년 교육세 특별세액공제 규모는 적용인원 274.4만명, 공제세액 8,512억원으로 최근 3년간(2020~2023년) 적용인원(7.6%↑) 및 공제세액(1.3%↑) 증가 추세

[표 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 추이(귀속년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1)]
적용인원	2,747	2,203	2,241	2,575	2,744	2,441
(증가율)	(4.5)	(△19.8)	(1.7)	(14.9)	(6.6)	(7.6)
공제세액	10,704	8,194	8,345	8,350	8,512	8,350
(증가율)	(△2.5)	(△23.4)	(1.8)	(0.1)	(13.6)	(1.3)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1) 2020~2023년 평균
자료: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국세통계연보」 및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활용한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재정패널조사」(제16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귀속소득) 상의 가구별 소득, 교육비 지출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변경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2022년 기준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을 추정함

-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따른 세부 공제내역이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2)]
- 「재정패널조사」에는 조사되지 않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별 가계의 교육비 지출 내역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통계청·교육부)의 소득별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 자료를

2)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상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공제사항을 모두 포함함

활용함[3]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2022년 기준 「재정패널조사」의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한 추정치에 대해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의 관련 실적치와의 관계를 반영하여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공제를 신청한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나,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미시자료에는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및 결정세액 여부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재정패널조사」 추정치는 「국세통계연보」 실적치보다 과대추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추청치 대비 실적치 비율(이하 '조정비율') 등을 적용하여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이후 2027년부터 5년 동안의 추계기간의 세수효과에 대해 분석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현행 세액공제 제도대상인 기존 교육비의 경우 만 0~25세 인구의 연도별 증감률[4]을 적용하고,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교육비의 경우 만 7~12세 인구의 연도별 증감률[5]을 적용함

3)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대비 학교급별 학원비 지출액 비중을 반영함
4) ('27년) -3.6%, ('28년) -2.8%, ('29년) -2.5%, ('30년) -2.4%, ('31년) -2.0%
5) ('27년) -6.0%, ('28년) -7.6%, ('29년) -8.3%, ('30년) -7.5%, ('31년) -6.9%

(3) 추계 결과

❑ (조정비율)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현행 제도 하의 「재정패널조사」 추정치에 대한 「국세통계연보」 실적치의 비율은 대상인원 전체는 0.82, 대상금액 전체는 0.53으로 계산됨

[표 5]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대상 인원·금액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2022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과세대상 총급여 구간	추정치(재정패널조사)			실적치(국세통계연보)[1]			조정비율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A	B	C=B×0.15	D	E	F=E×0.15	G=D/A	H=E/B
전체	3,136	104,835	15,725	2,575	55,668	8,350	0.82	0.53
1천만 이하	46	744	112	–	–	–	–	–
1.5천만 이하	69	2,463	369	0	0	0	0.00	0.00
2천만 이하	78	1,527	229	1	6	1	0.02	0.00
3천만 이하	270	9,252	1,388	53	285	43	0.20	0.03
4천만 이하	332	10,546	1,582	148	1,389	208	0.45	0.13
4.5천만 이하	168	4,933	740	128	1,669	250	0.76	0.34
5천만 이하	165	5,044	757	157	2,307	346	0.95	0.46
6천만 이하	362	10,531	1,580	356	5,827	874	0.98	0.55
8천만 이하	608	18,532	2,780	663	12,545	1,882	1.09	0.68
1억 이하	460	16,354	2,453	451	11,838	1,776	0.98	0.72
2억 이하	530	22,932	3,440	543	16,744	2,512	1.02	0.73
3억 이하	31	1,379	207	49	2,002	300	1.59	1.45
5억 이하	9	430	65	16	711	107	1.84	1.65
10억 이하[2]	6	133	20	6	268	40	1.00	2.01
10억 초과[2]	1	35	5	1	77	12	1.00	2.20

주: 1) 실적치는 「국세통계연보」 상의 결정세액 있는 자의 자료임
2) 과세대상 총급여 5억원 초과의 경우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조정비율을 계산함

자료: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차년도, 2024년) 및 「국세통계연보」(국세청, 2023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할 경우 소득세 수입 감소액은 4,493억원으로 추계됨

○ (현행 공제한도 상향)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규

모는 8,795억원으로 추계됨

○ (공제대상 확대)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4,210억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전체 규모는 1조 3,005억원이며 이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현행(8,512억원) 대비 4,4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 2023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총급여 구간	현행 (국세통계연보 실적치)			개정안							현행 대비 세수효과[2]
				현행 공제한도 상향			공제대상 확대			공제세액 합계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D	E	F	I	J	K =J×0.15	L	M	N= M×0.15	O =K+N	P =F−O
전체	2,744	56,747	8,512	2,744	58,635	8,795	3,592	28,064	4,210	13,005	−4,493
1천만 이하	−	−	−	−	−	−	−	−	−	−	−
1.5천만 이하	0	0	0	0	0	0	0	0	0	0	−0
2천만 이하	2	7	1	2	7	1	2	4	1	2	−1
3천만 이하	57	262	39	57	265	40	78	116	17	57	−18
4천만 이하	145	1,122	168	145	1,143	171	183	453	68	239	−71
4.5천만 이하	120	1,372	206	120	1,390	208	145	578	87	295	−89
5천만 이하	153	2,045	307	153	2,138	321	185	839	126	447	−140
6천만 이하	362	5,532	830	362	5,651	848	480	3,452	518	1,365	−536
8천만 이하	706	12,731	1,910	706	13,079	1,962	999	8,597	1,290	3,251	−1,342
1억 이하	508	12,487	1,873	508	12,762	1,914	657	6,242	936	2,851	−978
2억 이하	612	18,049	2,707	612	18,935	2,840	768	7,178	1,077	3,917	−1,210
3억 이하	53	2,045	307	53	2,166	325	68	605	91	416	−109
5억 이하	18	758	114	18	763	114	18	−	−	114	−1
10억 이하[1]	6	267	40	6	267	40	6	−	−	40	−
10억 초과[1]	1	68	10	1	68	10	1	−	−	10	−

주: 1) 과세대상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은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5억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2) 개정안에 따른 모든 총급여 구간별 1인당 세수효과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결정세액[「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개정안에 따른 공제세액 모두를 세수효과가 되는 것으로 함

자료: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차년도, 2024년) 및 「국세통계연보」(국세청, 2024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600만원 상향할 경우, 2027년 3,680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조 5,876억원(연평균 3,175억원)으로 소득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안 제59조의4제3항)	−3,680	−3,412	−3,141	−2,916	−2,727	−15,876	−3,175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